#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89

발의연월일: 2022. 9. 16.

발 의 자:유경준·조명희·정동만

김희국 • 이채익 • 박수영

정우택 • 이명수 • 강대식

김성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안전기준 강화 전에 허가를 받아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한시적(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보강의무가 본격 시행된 2020년 5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하여 어린이집·학원 등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병원은 코로나 19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공사착수가 여의치 않았으나 벌칙 규정이 있어 다수의 범법자 양산이 예상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기간 및 처벌기한 연장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기간과 미보강으로 인한 처벌기한을 연장하여 보다 많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 고 화재사고시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강대상"을 "보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이 인가(단,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민합의체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되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보강대상 건축물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강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제28조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을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폭"을 "2차선"으로 한다.

법률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제29조제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을 "제29조제2항의 규 정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8824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중 "교육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을 "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을 받은 후 3년이 되는 날까지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안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능보강) ①·② (생 략) 능보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 보강대상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 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 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 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이 인가(단, 자율주택정비 사업의 경우 주민합의체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되거나 폐업으 로 인하여 보강대상 건축물 용 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강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 ①·② (생 략)
- ③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 •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지원 및 특례) ①・② (생 략)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 <삭 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하는 경우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 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관리자 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 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 다.

(1)·(2) (현행과	같음)
③	
	<u>2025년 12월</u>
31일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 (생 략)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 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 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 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 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u>폭</u> 이상의 도 로가 있는 경우
- ③ ~ ⑨ (생 략)

법률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제대한 유효기간) 제29조제2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법률 제18824호 건축물관리법

(연행과 살음)
(2)
1.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
<u>위</u>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
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u>2</u> 차선
③ ~ ⑨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2조(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9조제2항의
<u> </u>
· 법률 제18824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체
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
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법률 부칙
세8조(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
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을 받
은 후 3년이 되는 날까지는